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35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2일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Ⅲ. 검토의견

1.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에서의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38조 및 제3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② (생략)	제38조(안전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이상기후(「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u>

④ (생 략)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u>폭염·한파</u>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u>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u>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조치)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u> <u>서</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추락·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와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나, 물리력, 작업 행태나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에서의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현행 보건조치 의무의 발생 요건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상기후로¹⁾ 인한 자연재난”이라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의 정의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 제38조제5호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요건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²⁾ 포함될 수 있으며,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을 규정한 개정안 제39조제7호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위험 요인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각각의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2)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른 의무에 같은 내용의 의무 발생 요건을 규정한 개정안은 의무 주체인 사업주의 혼란을 초래하고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비교적 무겁게 제재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각각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이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호우·대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도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